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47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피 고 인 김○○ (63 -2), ○○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검 사 신승희(기소), 홍성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미(국선)
판 결 선 고 201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심부

름센터에 (생략) 200만 원을 주고 녹음을 의뢰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즈음 남○○의 차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동인이 방○○ 등 불특정 다수인과 통화 또는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방○○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상원 _____